《종자법》 실시와 법규에 근거한 종자관리 시행에 관한 통지

○ 2016년 1월 15일 농업부는 《종자법》 실시와 법규에 근거한 종자 관리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농종발 2016 1호).

○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이하 《종자법》으로 약칭)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2015년 11월 4일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새롭게 수정된 《종자법》을 관철 실시하여 법에 의거한 종자 관리를 시행하고 현대적 종자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함.

1. 《종자법》의 자발성 및 책임감을 관철

(1) 《종자법》의 중요성

○ 새롭게 수정된 《종자법》은 과거 15년의 시행을 기초로 하여 현대 농업의 발전수요 및 종자 산업 발전의 실제적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국제 종자 산업의 입법 이념을 참고로 하여 중국 종자 산업과 관련된 기본 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

○ 금번 수정은 중앙정부의 개혁 가속화 추진 및 "의법치국(依法治国)" 전략을 관철하고 있으며, 현대 종자 산업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현대 종자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종자 산업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 국가 식량안보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이를 철저히 학습하여 파악하고, 기본적인 관념 및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종자법》에 맞추도록 하고, 사명감과 긴박감을 강화함으로써 각 제도 및 업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종자 산업에 대한 전면적 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

⑵ 《종자법》의 본질

- 현대종자 산업의 발전, 식량안전 확보, 농민이익 보호를 근본적 목표로 삼고; 시장화 개혁 유지, 혁신 장려, 정부기관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적절한 관리 등을 원칙으로 삼아; 종자 산업 관련 과학연구 및 육종, 생산경영, 감독·관리 등의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도록 함.
- 종자 산업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자 관리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시장의 주체적 활력을 이끌어내도록 함.
- 혁신 측면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연구 개혁 및 자주혁신을 추진하며,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 농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행위 규범을 마련하며,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주체적 책임 수행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배상 책임을 강화
-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종자 비축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자 산업의 대외 교류·협력을 규범화하며, 안전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종자 산업의 안전을 확보

2. 종자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법률제도시스템을 마련

⑴ 혁신을 장려하는 재정지원제도와 품종권 보호제도를 마련

- 혁신으로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념을 견지하고, 종자 산업 혁신에 대한 재정 투입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연구기관의 기초연구 및 기업의 자주혁신을 지원하며 혁신 장려정책의 제도화를 추진
- 유전물질 보호 및 이용 제도를 개선하여 유전물질의 개발 및 공개적 이용을 촉진
- 엄격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품종권의 신청, 수리, 심사, 권한부여 등과 관련된 과정을 개선하고, 품종권 관련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개선함으로써 품종권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 재정지원을 이용해 종자 산업 과학연구 성과 공개 및 양도 제도를 마련하고, 사사로운 거래를 금지

⑵ 현대 농업 발전에 적합한 품종 관리제도를 마련

- 산출량이 많고, 저항력이 강하며, 널리 보급이 용이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주요 농작물 품종의 심사 결정 제도를 개혁하고, 품종 안전을 중점으로 하는 "녹색(绿色)" 지표 시스템을 마련
- 품종 실험방법을 다양화하고, 배양-번식-보급을 모두 시행하는 기업이 자체적인 품종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원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연합체, 과학기업 연합체, 과학연구기관 연합체 등이 품종 실험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 실험을 국가 및 성급 실험과 함께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동일한 생태구역에 속한 성(省)간 종자도입과 관련된 서류 등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종자 도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시장수요에 맞춰 농업부와 개별 성이 협력하여 비주류 농산물의 품종 등록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3) 종자기업의 시장진입 및 행위 규범 제도를 개선

-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동시에 적절한 관리,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함.
- 종자 생산경영 허가 제도를 단일화하고, 자본 등록 및 선증후조(先证后照)[30] 등의 조건을 생략하고, 허가를 위한 심사 비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
- 기업이 지점을 설립하고 위탁 생산 및 대리 판매를 진행하는 포장된 종자의 경우, 현급 서류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종자 산업 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심사비준, 온라인 서류 등록 등을 시행
- 기업 행위 규범 제도를 마련하고, 종자 생산 경영 관련 서류등록제도, 라벨진실성제도, 생산지 검역제도 등을 개선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

(4) 종자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제도를 강화

-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검측 관련 기술 표준을 개선하고, 종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안전에 대해 생산 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라벨 표시 정보와 결합하여 생산 이력제를 실현함으로써 종자 품질 안전을 확보
- 재난복구를 위한 조달 및 과부족 조정 등을 목표로 삼아 국가 및 성급 종자 비축 제도를 마련

30) 우선 허가 심사비준기관에서 관련 허가증명서(有关许可证明文件)를 발급받고, 그 후 공상관리부처에서 사업자 등록증(营业执照)을 신청, 발급받는 것

- 종자 수출입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우량 품종자원을 도입하고, 대외협력 및 교류를 추진
- 평등, 상생, 공영의 원칙에 따라 종자 산업 FDI 및 합작 R&D와 관련된 안전 심사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주권 및 종자 산업의 안전을 보호

3. 《종자법》에 제시된 각종 과제를 철저히 수행

(1) 행정관리업무 추진

- 주요 농작물 품종의 심사결정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하고, 실험을 통한 심사결정 절차를 규범화하며,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생태지역 내 성간 종자 도입에 대한 서류 등록을 시작함으로써 종자 도입의 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
- 비주류 농작물의 품종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 정보 및 표준 샘플 관리를 강화
- 새로운 품종권에 대한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DUS테스트 및 승인을 실시하고, 품종 DNA 검증 및 이에 대한 표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제고
- 성급 차원에서는 배양-번식-보급 일체화 기업에 대한 심사 비준을 엄격히 하고, 유전물질 자원 보호, 종자 비축 및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
- 현급 차원에서는 종자 생산 경영 허가 및 서류 등록 관리를 실시

(2)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

-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농민의 이익이나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이러한 위법 기록을 사회신용조회시스템에 포함하도록 함.
-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작물, 중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기업 감독, 시장 검사 및 기지 순찰 등을 통해 종자 라벨 진실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강제권을 행사하도록 함.
- 전국 품종 데이터, 표준 샘플, 퀵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조를 통한 권리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를 단속
- 상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하급 농업 주관 부처의 감독·관리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행정 문책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유기 등을 엄격히 바로잡아야 함.

(3) 종자 산업 체제 개혁을 추진

- 종자 산업 개혁 추진을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의 주요 과제로 삼고, 종자 산업 개혁을 혁신·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함.
- 기초 과학연구와 상업화 육종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기업이 공익성 성과를 이용하여 신품종을 키우도록 장려
- 종자 산업 연구 성과의 권익화 개혁을 추진하고, 성과 및 권익의 공유와 이전, 과학연구자들에 대한 유형별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과학자가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
- 종자 산업 관련 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산학연이 결합된 R&D 혁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자 산업의 배양-번식-보급 일체화 수준을 제고

(4) 종자 산업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

-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금융보험부 등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함.
- 품종 혁신 장려를 목표로 하여,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유전물질 보호 및 품종의 선별 육성, 실험 및 시범보급 등을 지원하고, 보급 면적에 따른 사후 보조금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함.
- 종자 생산 기지를 안정화하고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기본 농경지 영구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종자 생산 중점 현에 대한 장려, 종자 생산에 대한 보험 및 농기계 보조금 정책 등을 실시하며 육종 기지를 개발하도록 함.

4. 법에 의거한 종자 관리 역량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

(1) 법에 의거한 종자 관리를 실시

- 각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종자 관리를 강화 실시하며, 단순히 종자를 관리하는 것에서 종자 산업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
- 유전물질의 수집, 신품종 보호, 품종 심사결정 및 등록, 종자 생산 경영 허가 및 서류 등록, 품질 감독 등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업무를 강화 실시
-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을 모두 중시하고, 종자와 종묘를 모두 중시하도록 함.
- 사전허가 중심의 관리에서 사후 감독·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기능이 명확하며 제도가 완비된 종자 산업 관리시스템을 구축

○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에 소속된 종합적 집법 기관 및 그 위탁을 받은 종자 관리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종자 관련 관리 업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종자 산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⑵ 현급 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

○ 《종자법》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현급 농업 주관 부처는 종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함.

○ 관리 담당자는 종자 생산 경영 허가, 서류 등록 관리 및 위조 등 권리침해 안건의 조사처리 업무, 품종 실험 및 시범사업, 심사결정 및 등록 후의 추적평가, 종자 산업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아 실시하도록 함.

○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유전물질 보호 및 품종 실험, 전시시범, 종자 검측, 집법 장비 등 인프라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규범 표준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종자 관리 업무 경비를 확보하고, 기술 및 서비스 지원 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⑶ 종자 산업 정보화 건설 및 생산이력제 관리를 추진

○ 종자 산업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종 보호, 심사·결정, 등록 및 종자 생산 경영 허가 및 서류 등록, 라벨 등의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품종 선별육성에서 종자 소매까지 산업 전 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취합

○ 정보화를 통해 종자 산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

○ 종자 산업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여타 정보플랫폼과의 연결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보의 조회, 검색,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

○ 품종 표시 및 종자 품질인증 실시를 통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집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품종 보급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신품종 전시 및 시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민이 우량종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우량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⑷ 관리 및 집법 효율성을 제고

○ 종자 관리 및 법 집행 관련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농업부와 개별 성의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종자 관리와 관련하여 권리 및 책임 목록을 작성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권한을 사용했을 경우 감독을 받도록 하고 위법행위는 반드시 규명, 처벌하도록 함.

○ 사고에 대한 조사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인계하도록 하며, 이벌대관(以罚代管)[31], 이벌대형(以罚代刑)[32]을 근절하도록 함.

○ 관리원이 종자 생산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험검측요이 결과를 허위 날조하거나, 집법 요원이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고 문책하도록 함.

5. 《종자법》 관철 실시를 위한 조직적 지도 강화

(1) 총괄적 조정 강화

○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종자법》 시행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고,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종자법》을 공동 추진하도록 함.

○ 새롭게 추가된 법정 직무 및 관리 기능 등에 대해서는 편제처, 인사처,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각각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마련

○ 종자업 관련 협회가 법규 및 정책의 홍보, 업계의 자율성 강화, 합법적 권익의 보호, 신뢰도 구축, 사회 감독 참여,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2) 관련 법규 규정을 개정

○ 현재 농업부에서는 《종자법》에 따라, 품종 심사·결정 등 관련 규정을 수정 중임.

○ 성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성급 인민대표대회 입법기관,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자법》 관련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방성 법규 제정 및 수정을 시행하도록 함.

○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 현지 농업 발전 상황 및 종자 산업 현황에 기반하여 종자 관리 측면의 규정 및 제도를 분석하고, 새로운 《종자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정리, 삭제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도록 함.

31) 관리할 별도의 방법을 찾지 못해 처벌로 대신하는 것
32) 형사 처벌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벌금으로 대신하는 것

⑶ 법률 상식 보급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 성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종자법》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제정하고, 종자 공급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형식의 홍보 및 교육·훈련을 실시
-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입법 정신 및 원칙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을 기본 단위로 삼아 과학연구기관, 기업, 판매점 및 재배 농가, 전업 합작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함.
- 라디오, TV, 인터넷, 잡지, 홍보용 현수막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률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경영자들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농민들이 법률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⑷ 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

- 각 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종자법》시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긴급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성급 농업 주관 부처에서는《종자법》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2016년 6월 말 전까지 실시 종합상황을 농업부 종자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함.
- 농업부는 적절한 시기에 전국의 실시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법률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현대 종자 산업의 발전을 확보해야 함.